

# 『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』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구미시 거의동 일원에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「도시개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도시개발사업의 명칭, 위치, 기간, 범위, 시행자 및 사무소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3조 ~ 제7조)
- 도시개발사업의 비용부담,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, 제9조)
- 사업의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0조)
- 토지 등의 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2조)
- 환지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3조 ~ 제18조)
- 토지평가협의회의 설치, 기능,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24조 ~ 제30조)

#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시개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 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,  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」은

-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 
「도시개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 시행에  
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 
위반됨은 없으나,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 
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